

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일 | 처리기간 즉시 |
|------|-----|------|---------|
| 청산인 | 성명 | 생년월일 | |
| | 주소 | 전화번호 | |
| 청산법인 | 명칭 | 전화번호 | |
| | 소재지 | | |

해산 연월일

해산 사유

청산인 대표권의 제한 내용(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)

「민법」 제86조제1항 및 「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외교부장관 귀하

| | | |
|------------|--|--------|
| 신고인 제출서류 | 1.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.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.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.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.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 회의록 1부 | 수수료 없음 |
|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|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| |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외교부